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19
----------	-------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의자 : 박형수 · 조수진 · 정경희
김영선 · 이채익 · 서범수
엄태영 · 임병현 · 유상범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 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

조의2제1항 단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